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박연희 외 2명
소유물건(2025타경51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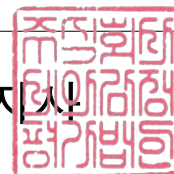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수경

감정평가서번호: SD2025-02-048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세아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범영

김범영

(주)세아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지사장 김범영



감정평가액	이억오천칠백만원정 (₩257,000,000.-)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수경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연희 외 2명 (2025타경51645)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10.02	2025.09.29 ~ 2025.10.02 2025.10.10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257,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257,000,000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유영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의뢰한 평가명령(사건: 2025타경51645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박연희 외 2명)에 따른 부동산(구분건물)에 대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의 기준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 및 감정평가이론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여기서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함.

나. 감정평가 조건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4.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0월 02일로 하였음.

5. 대상물건의 확인(실지조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5년 09월 29일 ~ 2025년 10월 02일에 걸쳐 실지조사를 시행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6. 감정평가의 방법

본건 구분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입지조건과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이용 및 관리상태, 위치별, 층별 효용도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과 인근 동일한 유형의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검토는 하지 아니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기타사항

- 1) 본건의 소재지, 지번, 건물 명칭 및 내역, 전용부분 및 대지권의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기준으로 하였음.
- 2) 본건은 "전유부분 및 대지권, 공용부분 등"을 일괄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 하시기 바람.
- 3) 본건의 호별 위치확인은 관련 공부 및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을 근거로 표시 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 하시기 바람.
- 4) 본건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하여는 집합건축물대장상 등록된 건축물 현황 및 평균적 이용상태 등에 의거 조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5)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 하시기 바람.
- 6) 본건 평가시 인용한 실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의 사례자료 지번은 개인정보 보호 관계로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II. 대상 부동산(구분건물)의 개요

(출처 :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재지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366 [도로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19]				
건물명	청주분평주공6단지아파트				
건물의 구조 및 규모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경사지붕 15층 아파트				
본건	동/층/호	전유면적(㎡)	대지권면적(㎡)	용도(공부상)	사용승인일
1	제601동/ 제8층/제804호	84.340	44.0827	아파트	1999.09.0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구분건물의 감정평가액 산출

1. 거래사례비교법의 정의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비준가액이란 이러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함.

2. 거래사례의 수집 및 선택

가. 거래사례 수집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부동산원(KAIS) 등)

기호	소재지(명칭)	동/층/호	거래시점	전유면적(㎡)	거래총액(원)	거래단가(㎡/원)
A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366 (청주분평주공6단지아파트)	603동/ 7층/7**호	2025.08.26	84.3400	263,000,000	3,118,330
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366 (청주분평주공6단지아파트)	608동/ 6층/6**호	2025.03.31	84.3400	255,000,000	3,023,476
C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366 (청주분평주공6단지아파트)	603동/ 14층/14**호	2025.08.18	84.3400	255,000,000	3,023,476

나. 거래사례 선택 및 이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며,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하며,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 판단되는 사례(A)를 선정함.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사례가액을 정상화 하는 작업으로서, 상기 사례의 경우 사정보정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시점수정

가. 매매가격지수

기호	기 간			시점수정치	적용
A	2025.08.26	~	2025.10.02	아파트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25.08.26~25.10.02) 거래시점 : 2025.08.26, 2025년07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5.10.02, 2025년09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 므로 2025년08월 지수를 적용함 2025.08.26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7월) : 100.1 2025.10.02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8월) : 100.0 시점수정치 : $100.0/100.1 \approx 0.99900$	0.99900

나. 시점수정치

구분건물의 경우 용도에 따라 각 용도의 특성에 맞는 시점수정치를 적용하되, 본건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는 아파트로서 본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 가격지수를 시점 수정치로 결정 함.

5.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① 주거용 공동주택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이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 계단식) 등
- 호 별 요 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 기 타 요 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본건	사례	외부요인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비교치
				층별효용	위치별효용	기타		
1	A	1.00	1.00	0.98	1.00	1.00	1.00	0.980
본건은 사례 대비 위치별효용 등의 호별요인 열세, 기타 제요인은 상호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단가

본건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출단가 (원/㎡)	비고
1	A	3,118,330	1.000	0.99900	0.980	3,052,907	-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

본건	전유면적(㎡)	산출단가(원/㎡)	감정평가액(원)
1	84.3400	3,052,907	257,000,000
합계	84.3400	-	257,000,000

8.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주변지역 유사부동산 가격수준, 인근 유사부동산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 하였으며, 본건 대상물건의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이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검토하지 아니하였음.

IV. 참고 가격 자료

1. 인근 구분건물의 전유면적 기준 시세수준(원/㎡)

구분	시세수준	비고
본건 유사 물건(1)	3,000,000원/㎡ 내외	-

의 견: 본건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유사 물건의 가격수준은 대체로 상기와 같은 가격수준으로 조사되나, 층별, 향별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인근 구분건물 평가전례(출처: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명칭)	평가목적	동/층/호	기준시점	전유면적 (㎡)	평가총액(원)	평가단가 (원/㎡)
a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366 (청주분평주공6단지아파트)	경매	603동/ 14층/14**호	2024.11.05	84.340	261,000,000	3,094,617
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366 (청주분평주공6단지아파트)	경매	611동/ 5층/5**호	2024.04.18	84.340	245,000,000	2,904,909
c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366 (청주분평주공6단지아파트)	경매	607동/ 17층/17**호	2024.02.26	42.170	129,000,000	3,059,04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

1. 구분건물의 감정평가액 결정

종별	수량	감정평가액(원)
구분건물	1개호	257,000,000

2. 구분건물의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와 같이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이론 등에 근거하여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되, 평가목적, 대상불건의 특성, 인근지역내 유사 부동산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건물의 표시	1366 청주분평 주공 아파트 제601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경사지붕 15층				
	[도로명주소]				지하층	416.0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층	407.0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7번길 19				2층	404.46		
					3층	404.46		
					4층	404.46		
					5층	399.02		
					6층	399.02		
					7층	399.02		
					8층	399.02		
					9층	399.02		
					10층	399.02		
					11층	399.02		
					12층	399.02		
					13층	399.02		
	14층	399.02						
	15층	399.02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내) 제8층 제804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84.34	84.34	257,000,000	비준가액 (공용부분 등 포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366	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49,765.8			
	대지권의종류 : 대지권의비율 :			1. 소유권	44.0827			
				1.	----- 49,765.8	44.0827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77,100,000 179,900,000	
	합 계						₩257,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원평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경사지붕 15층 건물 중 제601동 제8층 제804호 로서,
 -외벽: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 마감 등.
 -바닥: 바닥마감재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 단지 사방으로 노폭 8~1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건폐율 25%이하, 용적률 230%이하, 높이 최저10층이상 최고20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분평택지개발지구),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평중학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주하이텍고등학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원평중학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침수위험지구(미평지구)<자연재해대책법>.

(9)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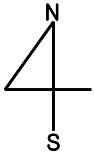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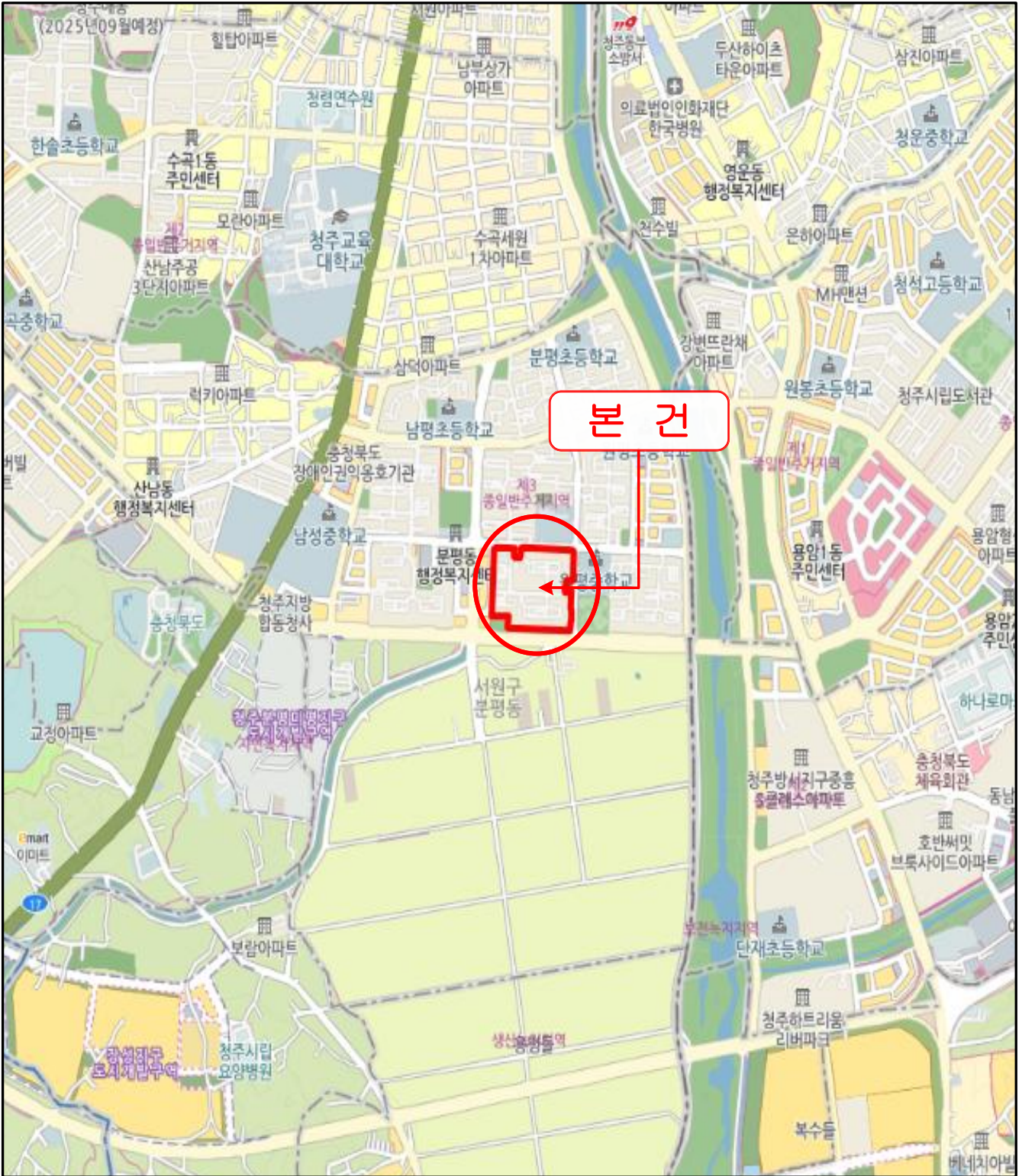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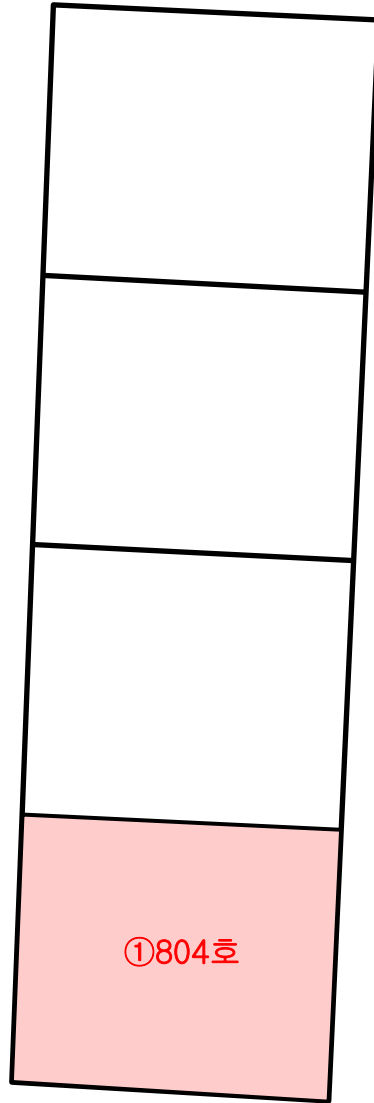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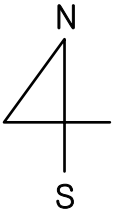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366
청주분평주공6단지아파트



호 별 배 치 도



[청주분평주공6단지아파트 제601동 제8층 제804호]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공동 현관]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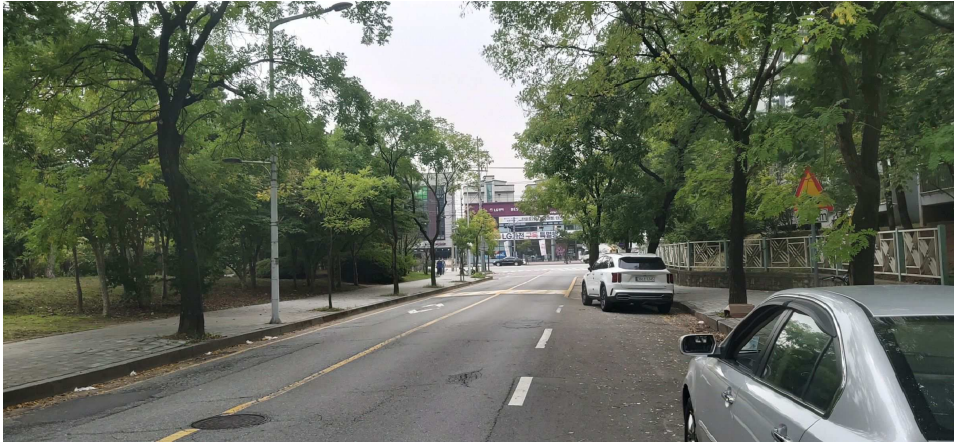


[세대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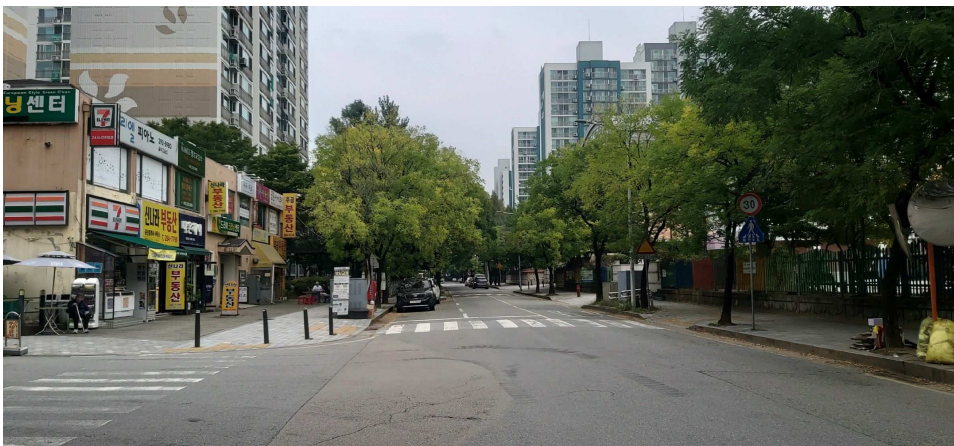


[주위 환경]

사 진 용 지



[주위 환경]



[주위 환경]